

의안번호	2211836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9.3.
추계번호	25C407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4조(지역 보조기기센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8.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신설) 9.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신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지역 보조기기센터) 제1항제8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지역 보조기기센터) 제1항제9호	·현재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을 실시 하고 있음(2025년 예산 기준 10억 8,700만원 편성). 또한, 지역보조기기 센터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상담, 평가, 공적급여 연계,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를 제공하고 있음(2025년 예산 기준 21억 4,500만원)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로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¹⁾하고 있으나 (부록 1 참고),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조기기센터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내용,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지원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

[부록 1] 지역보조기기센터 사업 및 예산 현황

- ① 보조기기 교부: ('24) 1,847 → ('25) 1,847백만원(전년동)
 ○ $3,550\text{명}(\text{평균 교부인원}) \times 776\text{천원}(\text{평균 교부단가}) \times 67\%(\text{평균 보조율}) = 1,847\text{백만원}$
- ② 중앙보조기기센터: ('24) 1,059 → ('25) 1,087백만원(+28백만원, 2.6%)
 ○ (상용임금) $12\text{명} \times 46,333\text{천원} = 556\text{백만원}(+17\text{백만원}, 3.1\%)$
 ○ (고용부담금) $12\text{명} \times 9,083\text{천원} = 109\text{백만원}(+8\text{백만원}, 7.9\%)$
 ○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및 국내·외 여비 등 422백만원(+3백만원, 0.7%)
- ③ 지역보조기기센터 : ('24) 2,095 → ('25) 2,145백만원(+50백만원, 2.4%)
 ○ (인건비) $16\text{개소} \times 5\text{명} \times 3,552\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times 50\% = 1,705\text{백만원}(+50\text{백만원}, 3\%)$
 ○ (운영비) $16\text{개소} \times 21\text{백만원} \times 50\% = 167\text{백만원}(\text{전년동})$
 ○ (특성화사업) $10\text{개소} \times 20.6\text{백만원} \times 50\% = 103\text{백만원}(\text{전년동})$
 ○ (기능보강사업) $10\text{개소} \times 34\text{백만원} \times 50\% = 170\text{백만원}(\text{전년동})$

○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5,079	○ 보조기기 교부(330-01): 1,847백만원 - $3,550\text{명}(\text{교부인원 평균}) \times 776\text{천원} \times 0.67 = 1,847\text{백만원}$
	○ 중앙보조기기센터(110-03 등) : 1,087백만원 - 상용임금 : $12\text{명} \times 46,333\text{천원} = 556\text{백만원}$ - 고용부담금 : $12\text{명} \times 9,083\text{천원} = 109\text{백만원}$ -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및 국내·외 여비등 422백만원
	○ 지역보조기기센터(330-01, 330-03) : 2,145백만원 - 인건비 : $16\text{개소} \times 5\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3,552\text{천원} \times 50\% = 1,705\text{백만원}$ - 운영비: $16\text{개소} \times 21\text{백만원} \times 50\% = 167\text{백만원}$ - 특성화사업: $10\text{개소} \times 20.6\text{백만원} \times 50\% = 103\text{백만원}$ - 기능보강사업: $10\text{개소} \times 34\text{백만원} \times 50\% = 170\text{백만원}$

○ 사업목적·내용

-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
-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 역할 수행
-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에게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상담, 평가, 공적급여 연계,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